

불교문화연구소 규정

제정	:	2003. 10. 1.
개정	:	2004. 10. 6.
개정	:	2009. 9. 1.
개정	:	2009. 10. 1.
개정	:	2012. 6. 22.
개정	:	2013. 5. 1.

제1장 총 칙

제1조(근거)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금강대학교 부설 불교문화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목적) 이 연구소는 금강대학교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불교 관련 제반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. 나아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활발한 국가간의 불교교류활동을 통한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간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) 이 연구소는 금강대학교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불교 전적의 연구와 번역
2. 자료 수집 및 연구
3. 연구업적물의 출판 및 보급
4. 각종의 특강,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
5. 국내외 각종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
6. 외부 학술연구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
7.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2장 조 직

제5조(기구) 이 연구소에 다음의 연구부(단)를 둘 수 있다.

1. 원전연구부
2. 천대학 연구부
3. 불교문화 연구부
4. 응용불교연구부
5. 국제학술교류연구부
6. 특별연구사업단

제6조(소장·부소장 및 단장) ① 이 연구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, 특별연구사업을 위하여 단장을 둘 수 있다.

②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, 부장이 단장을 겸할 수 있다.

③ 소장·부소장 및 단장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(연구교원) 또는 연구소 연구인력 중(HK교수 등)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부장, 단장) 부장,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HK교원, 연구위원 및 연구원) ① 이 연구소는 HK교원(HK교수, HK연구교수), 연구위원(객원연구위원 포함) 및 연구원(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포함)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연구원 임용은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연구교수 및 자문위원) 이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교수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조교 및 직원) 이 연구소에 약간명의 조교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11조(설치)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연구소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12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불교문화연구소장(이하 ‘소장’이라 한다), 부소장, 단장,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(HK교수 포함)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11명 이내로 한다.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삭제 <2013. 5. 1.>

③ 자문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사업계획 및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
2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회의)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4조의 2(보고) 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 정

제15조(재정) ① 이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지원금, 국고보조금, 연구용역비, 기부금,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③ 이 연구소의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6조(규정변경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거쳐,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(세부사항) 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